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336

발의연월일: 2023. 5. 26.

발 의 자: 강민정·문정복·민형배

황운하 · 김용민 · 강득구

최강욱 • 윤영덕 • 윤미향

소병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

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, 집행정 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 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,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 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. 학교폭력 행정 쟁송 기간의 특례,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10 조, 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).

또한, 최근 학교폭력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가해학생의 징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피해학생과 학교공동체를 위한 회복 지원이부족하다는 우려와 함께 가해자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해야한다는 의견과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됨.

이에 학교에는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, 교육지원청에는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,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교육적해결을 지원하고,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게는 이 법의 적용을배제하며,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교사가 맡도록하는 등 학교폭력의 교육적·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3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3, 제14조의4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의 제목 중 "주의의무"를 "배제 및 주의의무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.

② 이 법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제10조제3항 중 "상담·치료 및 교육"을 "상담·치료·교육과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(피해학생에 한정한다)"으로, "상담·치료·교육 기관을"을 "상담·치료·교육·법률상담 기관을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교육감은 피해학생을 위한 기관과 가해학생을 위한 기관을 분리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9항 중 "치유프로그램 운영"을 "치유프로그램 운영,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프로그램 연구·개발"로 한다.

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"을 "다음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보고하여야"를 "보고하고,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

중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"을 "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"로, "모두 거쳐야"를 "거쳐야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그 밖에"를 "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"으로, "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"를 "장 자체해결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제3항 전단 중 "(학교폭력문제를"을 "(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학교폭력문제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・실시하며"를 "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하며"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·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적·의학적 및 행정적 자문을 해 줄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·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은 회복지원단 소속 전문가 및 학교폭력사건 처리 절차 지원을 위한 시·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해당 학교에 보내 실태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.

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2(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의 설치) ① 학교폭력 당사자를 포함 한 학교공동체의 관계회복을 지원하고 일상적·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(이하"회복위원회"라 고 한다)를 둔다.
 - ② 회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상시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갈등해결 교육
 - 2. 학교공동체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
 - 3. 피해학생·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를 위한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 영
 - 4.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
 -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제2항의 관계회복 또는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피해학생·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관계회복 또는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4조의4에 따른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에게 지 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4조의3(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의 구성) ① 회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

한다.

- 1. 교장, 교감, 전문상담교사, 책임교사, 학년부장교사
- 2. 학교폭력 발생 학급담임교사
- 3. 회복적 갈등조정 전문가·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·회복적 사법 전문가
- 4. 소아청소년과 의사,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심리학자, 아동심리 전문가 등 아동·청소년 신체·정신건강 전문가
- 5. 학부모
- 6. 그 밖에 갈등조정 및 관계회복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
- ③ 그 밖에 회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의4(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) ① 교육장은 회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폭력 당사자를 포함한 학교공동체의 관계회복 및 일 상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 공동체회복지원단(이하"회복지원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 - ② 회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요청한 회복위원회의 업무지원
 - 2. 학교공동체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·보급
 - 3. 피해학생·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를 위한 갈등조정 프로그램 안 내·보급

- 4. 그 밖에 피해학생·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, 해당 학교의 교사 등 학교공동체의 관계회복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③ 회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- 1. 현직 또는 퇴직 교사
- 2. 회복적 갈등조정 전문가·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·회복적 사법 전문가
- 3. 소아청소년과 의사,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심리학자, 아동심리 전문가 등 아동·청소년 신체·정신건강 전문가
- 4. 그 밖에 갈등조정 및 관계회복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
- ④ 제1항에 따른 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제1항 중 "보호와"를 "보호, 일상적 갈등의 원만한 해결 및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전담기구와"를 "회복위원회와"로 한다.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7조의3(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등) ① 교육장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심 판법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청구사실 또는 신청사실과 그 결과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.
 -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집행정지의 심리 •결정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

-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교육장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소 제기 사실 또는 신청사실과 그 결과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의 심리·결정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제17조의4(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) ①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한 다.
 - ② 「행정심판법」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심판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③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3조(해석 · 적용의 주의의무) 이 제3조(해석 · 적용의 배제 및 주 법을 해석 · 적용하는 경우 국 의의무) ① -----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 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. <신 설> ② 이 법은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. 제10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의 기능 등) ① • ② (현행과 같 의 기능 등) ① • ② (생 략) 유)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 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상담ㆍ치료 및 교 -----상담 • 육을 담당할 상담・치료・교육 치료・교육과 학교폭력 관련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 <후 법률상담(피해학생에 한정한다) -----상담·치료·교육 단 신설> ·법률상담 기관을---------. 이 경우 교육감은 피 해학생을 위한 기관과 가해학 생을 위한 기관을 분리하여 지 정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④ (생 략)

- 제11조(교육감의 임무) ① ~ ⑧ (생 략)
 -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, 상담, 치유프로그램
 안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① ~ ② (생 략)

- 제13조의2(학교의 장의 자체해결)
 -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<u>피해학생 및 그</u>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~ 4. (생 략)
 -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<u>다음</u> <u>각 호에 해당하는</u> 절차를 <u>모두</u> 거쳐야 한다.

제11조(교육감의 임무) ① ~ ⑧
(현행과 같음)
9
<u>치유프로그램</u>
운영,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프
<u>로그램 연구·개발</u>
① ~ 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의2(학교의 장의 자체해결)
①

·
보고하
고,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
<u> </u>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②
학교
곡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
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

- 1.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 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
- 2.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 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
- 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담기구 구성) ①·② (생 략)

③ 학교의 장은 교감, 전문상담 교사,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 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,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 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

인 및 심의----거쳐야---

<삭 제>

<삭 제>

-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 ③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-----장 자체 해결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 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 제14조(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 담기구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---(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학교폭력문제를--

(이하 "전담기구"라 한다)를 구성한다.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
- ④ (생략)
-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한다)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·실시하며, 학교의 장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~ ⑧ (생 략) <신 설>

<u>.</u>
④ (현행과 같음)
⑤
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
라 한다)를 실시하며

- ⑥ ∼ ⑧ (현행과 같음)
- ⑨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시·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정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적·의학적 및 행정적 자문을 해 줄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·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정은 회복지원단 소속 전문가 및 학교폭력사건 처리 절차 지원을 위한 시·도교육청 또는 교육점 도는 교육지원성 소속 공무원

<u>⑨</u> (생 략) <신 설>

- 을 해당 학교에 보내 실태조사 에 참여시켜야 한다.
- ⑩ (현행 제9항과 같음)
- 제14조의2(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의 설치) ① 학교폭력 당사자를 포함한 학교공동체의 관계회복을 지원하고 일상적·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(이하 "회복위원회"라고 한다)를 둔다.
 - ② 회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상시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및 갈등해결 교육
 - 2. 학교공동체 관계회복 프로그 램 운영
 - 3. 피해학생・가해학생 및 그

 보호자를 위한 갈등조정 프로

 그램 운영
 - 4.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

 한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
 -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제2항의 관계회복 또는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실 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피해학생

<신 설>

- ·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.
-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관계 회복 또는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4 조의4에 따른 학교공동체회복 지원단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4조의3(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 의 구성) ① 회복위원회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 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 - ② 위원장은 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 - 1. 교장, 교감, 전문상담교사, 책임교사, 학년부장교사
 - 2. 학교폭력 발생 학급담임교사
 3. 회복적 갈등조정 전문가・회
 복적 생활교육 전문가・회복
 적 사법 전문가
 - 4. 소아청소년과 의사, 정신건 강의학과 의사, 심리학자, 아

<신 설>

 동심리 전문가 등 아동·청소

 년 신체·정신건강 전문가

 5. 학부모

- 6. 그 밖에 갈등조정 및 관계회 복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
- ③ 그 밖에 회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4(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)
① 교육장은 회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폭력 당사자를 포함한 학교공동체의 관계회복 및 일상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(이하 "회복지원단"이라한다)을 둔다.

- ② 회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요청한 회복위원회의업무 지원
- 2. 학교공동체 관계회복 프로그 램 안내・보급
- 3. 피해학생·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를 위한 갈등조정 프로

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・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 -----보호, 일상적 갈등의 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(학교폭력의 개념·실태 및 대처

그램 안내 • 보급

- 4. 그 밖에 피해학생 ·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, 해당 학교의 교사 등 학교공동체의 관계회 복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③ 회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- 1. 현직 또는 퇴직 교사
- 2. 회복적 갈등조정 전문가ㆍ회 복적 생활교<u>육 전문가·회복</u> 적 사법 전문가
- 3. 소아청소년과 의사, 정신건 강의학과 의사, 심리학자, 아 동심리 전문가 등 아동ㆍ청소 년 신체·정신건강 전문가
- 4. 그 밖에 갈등조정 및 관계회 복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
- ④ 제1항에 따른 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등) ① | 제15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등) ①
 - 원만한 해결 및-----

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)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(생략)
-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<u>전담기</u> 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·⑤ (생 략) 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회복위</u>
원회와
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- 제17조의3(피해학생의 진술권 보 장 등) ① 교육장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의2제 2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「행정심판법」 제30조제 2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청구사실 또는 신청사실 과 그 결과에 대하여 피해학생 과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집행정지 의 심리·결정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

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 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교육장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 기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 제23 조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 청한 경우 소 제기 사실 또는 신청사실과 그 결과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.

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의 심리·결정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증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 또는 그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 제17조의4(학교폭력 행정쟁송 기

 간) ①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

 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다른 쟁

 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

 는 재판하여야 한다.

② 「행정심판법」 제6조에 따

<신 설>

른 행정심판위원회는 제17조의 2에 따른 행정심판에 대하여 6 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③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